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4-41호

국민권익위원회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

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4-37호, 공고 제2024-39호와 관련하여,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 공고의 합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.

2024년 7월 24일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□ 최종합격자

지원코드(채용분야)	합격자(응시번호순)
인턴01(일반행정)	황○○(인턴0109)
인턴02(조사행정)	김○○(인턴0202), 이○○(인턴0204), 박○○(인턴0207)
인턴03(전산)	임○○(인턴0303)
인턴04(일반행정)	최○○(인턴0403), 신○○(인턴0407), 신○○(인턴0413)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○ 상세 기본증명서 1부(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)

○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

○ 증명사진 1매(파일제출)

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(붙임1)

○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(붙임2)

□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

○ 제출기한 : ’24. 7. 26.(금)

○ 제출방법 : 전자우편(suvn@korea.kr)

□ 유의사항

○ 합격자 통지 후,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채용 예정일은 ’24. 8. 1.(목)입니다.

□ 문의처 : 044-200-7185(운영지원과)

<붙임1>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(채용결격사유 등 확인)」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4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<붙임2>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국민권익위원회	채용방법	공개경쟁채용	채용직위(직급) 청년인턴
	채용사유	국민권익위원회 청년인턴 채용			
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**가 있는가?	[ ] 예 [ ] 아니오 [ 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**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**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 ] 예 [ ] 아니오 [ 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**①에서 "예"에 답변한 경우**, **다른 법률에서**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**인가?	[ ] 예 [ 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"가족채용"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